##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선교·김예지

안철수 · 정성국 · 윤재옥

김장겸 · 임종득 · 엄태영

유용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 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,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 평성에 맞지 않음.

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, 무죄·면소·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수당 등 지급 제한) ①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, 제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(이하 이 조에 서 "수당등"이라 한다)를 구속된 날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, 구속 된 이후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.

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, 면소,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된 수당등을 지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이후 구속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14조의2(수당 등 지급 제한) ①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 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 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에는 제7조,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, 특 별활동비(이하 이 조에서 "수 당등"이라 한다)를 구속된 날 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, 구 속된 이후 수당등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. 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, 면소,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
	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 나 환수된 수당등을 지급한다.